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표준분류 작성시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 약화 등〉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5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표준분류 작성시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 약화 (안 제22조제1항 전단)	3
2. 한국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의무화 (안 제22조제1항 후단)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5.

다.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 감소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됨.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1항).

Ⅲ. 검토의견

1. 한국표준분류 작성시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 약화

(안 제22조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u>기준으로</u>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u>참고하여</u>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표준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처리·분석 등에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시·공간적인 표준체계’인 통계분류 중에서, 「통계법」에 의해 통계의 신뢰도와 국제 비교성 등 품질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 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를 의미함.¹⁾²⁾

개정안은 한국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도록 하여 국제표준분류에 과도하게 기속되지 않

1)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처리·분석 등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표준체계를 말한다.
2. “표준분류”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 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로서, 통계의 신뢰도와 국제 비교성 등 품질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제공하는 분류를 말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분류는 경제분류 3종(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사회분류 2종(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및 보건분류 2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등 총 7종류가 있음.

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여 표준분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WHO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³⁾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⁴⁾ 이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외의 우려⁵⁾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게임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⁶⁾되고 있음.

더욱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과 가상·증강현실을 통한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 신설과 낙인효과로 인해 국내 게임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정안을 통하여 이러한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작성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산업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독자적인 산업으로

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4) ICD-11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은 2031년 시행예정인 KCD 제10차 개정시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2019년 7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의료·게임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진행 중임.

5) 국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협회는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국외적으로 영국비디오게임산업협회(UKIE) 등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에 대한 비판 입장을 제시

출처: 2019년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협회 보도자료 및 UKIE 기사

6) 분석방법에 따라 게임시장 위축 규모는 상이하나 유사산업 비교유추를 통한 추정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5조 1,057억원의 규모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음

출처: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2.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⁷⁾

다만, 표준분류의 작성 목적 중 하나가 통계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가 국제기준과 통일성 있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한국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국제표준분류와 전혀 다른 분류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제기될 수도 있음.

종합하면,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고시 행위는 정부의 다양한 재정⁸⁾, 세제 혜택⁹⁾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7) 제21대국회에서는 ‘홍보관측물제작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군들의 경우 산업 관련 기본통계 작성 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업 현황을 알기가 어려우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74)]

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우리나라 표준분류를 국제표준분류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와 함께 국내 산업의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 법·제도와 사회경제적 특성, 업계의 합리적 개정 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임.

한편,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한국표준분류가 국제표준분류와 괴리되어 국가 간 통계 비교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도 국제표준분류에 기속되지 않고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분류체계를 작성·운영¹⁰⁾하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 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10)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국제질병분류에는 없는 한의학 질환(화병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병진행정도(위암: 조기위암, 진행형위암) 등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국내 고유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힘.

2. 한국표준분류 작성 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안 제22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 이 경우 통계청장은 <u>미리</u>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u>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u>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은 표준분류 작성 시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재는 대통령령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서 국가통계위원회가 통계청장이 작성한 표준분류를 심의하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¹⁾ 통계청 훈령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표준분류 제·개정 각 단계에서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¹²⁾

표준분류는 통계작성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 및 집행에도 활용¹³⁾되

11)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2조(의견수렴) 각 단계에서 마련된 제·개정안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통계작성기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13)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규정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고 있음

어 민간부문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¹⁴⁾에서 의견수렴의 중요성은 크다고 보이므로 표준분류 제·개정 절차의 명확성과 의견수렴 절차의 구속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로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현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분류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동의하나, 의견청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으며 다른 입법례¹⁵⁾를 참고하여 ‘의견수렴’을 ‘의견청취’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표준분류 개정 시 의견수렴 및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표준분류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제11차 산업분류 개정 (2024. 1월)	1차: 2021. 12. 17. ~ ‘22. 1. 20. 2차: 2022. 7. 29. ~ 9. 4. 3차: 2022. 12. 23. ~ ‘23. 2. 5.	1차: 2022. 4. 28. 2차: 2022. 10. 20. 3차: 2023. 4. 26. 4차: 2023. 6. 28.
제8차 직업분류 개정 (2024. 7월)	1차: 2022. 6. 20. ~ 7. 10. 2차: 2023. 1. 18. ~ 2. 10. 3차: 2023. 6. 28. ~ 7. 21. 4차: 2023. 12. 27. ~ ‘24. 1. 21.	1차: 2022. 8. 17. 2차: 2023. 4. 20. 3차: 2023. 8. 29. 4차: 2024. 2. 28.
제8차 질병사인분류 개정 (2020. 6월)	1차: 2019. 2. 1. ~ 3. 6. 2차: 2019. 8. 1. ~ 9. 17 3차: 2020. 1. 3. ~ 1. 29.	1차: 2019. 7. 3. 2차: 2019. 12. 16. 3차: 2020. 3. 16. ~ 3. 20.

자료: 통계청

14) 예를 들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고 있음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u>기준으로</u>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u>미리</u>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분류) ① ----- ----- ----- ----- <u>참고하여</u> ----- ----- -----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미리</u>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